

○證人 李燦性 그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된 年度는 기억에 없읍니다마는 1年에 두번식 韓美空軍 또 陸軍과 海軍의 對空砲關係의 防空部隊 이와 같은 部隊가 실시하는 航空訓練입니다.

그러므로 光州事態와 전혀 관계가 없고 E3A1 警報機는 敵의 航空機를 탐지하는 문제이므로 地上에 있는 光州事件과는 전혀 관계를 지을 수 없는 航空機입니다. 그러므로 美軍이 光州事態를 뒤에서 도왔다 하는 얘기 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肯珪委員 지금 아침 會議에서도 좀 論議 가 되었읍니다마는 光州事態造作을 위해서 空輸部隊를 光州외곽에 事前配置하였을 뿐 아니라 29師團이 戰地를 떠나서 5月중순부터 미리 서울에 와 있다가 事前計劃에 의거 光州에 投入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李燦性 그와 같이 投入된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事前造作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은 꾸밀 수도 없고 꾸며지지도 않았읍니다.

○李肯珪委員 補充質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光州事態 前인 5月13日 19時 31師團은 全國「빌딩」을 비롯한 主要地域에 警戒兵力을 配置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 된 配置라고 생각이 됩니다.

○證人 李燦性 그래서 그때 당시 그와 같은 配置狀況을 당시 總長인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李肯珪委員 당시에 光州一團에서의 武器 및 彈藥被奪 현상에 대해서 證人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證人 李燦性 被奪된 상황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資料도 없고요. 그런데 被奪당한 武器 彈藥등이 80年7月25日 發表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軍人 23名 民間人 162名 警察 4名을 합해서 189名의 人命被害가 있다는 發表를 한 바 있읍니다. 그 이후에 이 人員이 역시 申告에 의해서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 物的被害는 銃器類가 5,000餘정 彈藥이 28餘萬發 手榴彈 552個 TNT 3,600kg라고 제가 統計를 가지고 있읍니다.

○李肯珪委員 光州事態 당시 政府는 光州事態 악화의 원인으로 組織的인 惡性 流言蜚語 流

布때문이라고 분석한 資料가 있읍니다. 流言蜚語가 있었는지 생자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읍니까?

○證人 李燦性 예. 당시 光州에서는 여러가지 流言蜚語가 亂舞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올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것을 몇개 種類別로 分류하면 대개 이런 것 이 있읍니다.

慶尚道 軍人만 골라서 光州에 投入했다 하는 식의 地域感情을 유발할 수 있는 종류의 流言蜚語가 있읍니다. 두번째는 女學生 姪產婦에 대해서 도저히 人間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참혹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市民을 홍분시키는 종류의 流言蜚語도 있읍니다. 또 하나는 敌艦軍에게 幻覺劑를 탄 술을 마시게 해서 軍人으로 하여금 市民을 虛殺하는데 동원했다 하는 식의 流言蜚語도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光州 이외의 地域에서도 많은 他地에서도 武裝蜂起가 일어나고 있고 自由友邦國도 光州示威를 支援하고 있다는 식으로 示威隊員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의 流言蜚語도 있읍니다. 대개 다음과 같은 종류인데 그 가지수는 제 현재 기억으로서는 한 20가지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첫부분에 얘기하신 말씀을 그 流言蜚語를 듣고 그곳에 配置된 軍人們의 出身道別分布는 報告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證人 李燦性 部隊마다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陸軍의 兵力補充制度로 봐서 一個道 어떠한 道 出身을 한 部隊에 물어서 넣는 경우는 없읍니다. 또 말하자면 計劃的인 充員을 할 때 個人的 회망에 의해서 자기 故鄉 가까이 配置되는 경우는 있지만 많은 人員을 동시에 많이 配置하는 경우는 없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光州에 임 敌艦軍이 慶尚道 軍인이 많았다 하는 것도 정확한 統計는 안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수긍할 수가 없는 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李肯珪委員 그당시 光州市民闘爭協議會 이름으로 5月14日 11時에 第2次 肉起大會開催를 알리는 開士回報 第7號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라 그동안의 참혹한 만행을”이라는 題目 아래 死亡者數를 報道하였읍니다. 그 記錄을 혹시 報告받은 사실이 계십니까?

○證人 李煥性 없읍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그당시에 光州에서 일어난 死亡者數를 그후에라도 報告 받은 적은 계십니까?

○證人 李煥性 수시수시에 발견되는 報告 말씀입니다? 혹은...

○李肯珪委員 綜合報告라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光州에서 數千名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과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證人 李煥性 그렇습니다. 그런데 2·3次 종합된 報告는 받았읍니다마는 그와같이 우리 軍에서 발표한데서 크게 어긋나는 그와같은 사실은 없었읍니다.

○李肯珪委員 예. 光州事態는 軍의 파ing진압으로 촉발되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 사실에 수긍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ing진압의 原因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證人 李煥性 저는 鎮壓作戰을 한 현지에서 목격한 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원인이라든지 현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제가 報告를 통해서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을 때 많이 市民이 느끼는 過剩鎮壓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나 하는 것 같으면 學生과 軍人間 示威行動을 하고 鎮壓行動을 하는 그 중간에는 서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結果가 새로운 原因이 되어서 악순환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學生의 강력한 대항이 軍人의 강력한 鎮壓을 부르고 軍人의 강력한 鎮壓이 새로운 原因이 되어서 學生들의 강력한 대응을 일으키듯이 이와같은 거듭되는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事件은 커지고 악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學生들이 물을 던지고 火焰瓶을 던지고 혹은 쇠「파이프」로써 戒嚴軍을 때렸을 때 戒嚴軍이 學生을 때려서 낭자한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할 때 그자리에는 자기 同僚學生의 쓰러짐을 보고 홍분하지 않는 學生이 없듯이 자기 戰友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홍분하지 않는 兵士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미 學生이나 士兵이나... 저는 士兵입니다. 理性이라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읍니다. 그런곳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도망가는 學生을 잡으려고 戒嚴軍이 뛰어가서 머리 끝까지 홍분에 차 있을 때 그 잡혔던 學生은 아마 심한 制數行動을 軍人們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를 보는 市民들은 과격한 행동 즉 過剩鎮壓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이와 같은 것이 그 일어난 현장부터 끝난 현장까지 다 한사람이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原因이 무엇이고 結果는 무엇이었다 할 것인데 이것 끝목에 뛰어 들어가고 建物안에 뛰어 들어가는 學生을 잡았을 때 하는 행동은 처음 시작하는 原因은 보지 않고 結果만 보기 때문에 더욱더 過剩鎮壓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이럴 때 좀더 노련했고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歷史가 깊었다 하면 그와 같은 잡았을때 저는 대항의식이 없는 學生을 거기에 制數行動을 안할만한 여유만 있었다면 이와같은 過剩鎮壓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읍니다.

그런 곳에서 過剩鎮壓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그 過激鎮壓은 空輸團의特性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까?

○證人 李煥性 空輸團의 特性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全的으로 賛成할 수 없고 全的으로 반대할 수도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강한 훈련을 받은 軍隊는 性格이 좀 거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받은 空輸特戰團 兵力은 다른 步兵보다는 좀 거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은 空輸團이나 一般軍部隊나 마찬가지가 그런 상황에서는 될 수 있다?...

○證人 李煥性 예. 다 같은 大韓民國의 國民의 자손이니까 本質의으로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 밖에 없지만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거친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李海瓚委員 光州에서는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假想的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제가 質問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하십시오.

그 光州事態의 初期라고 할 수 있는 80년 5月18일부터 5月21일까지의 作戰指揮責任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證人 李燦性 末端부터 말씀드린다면 鄉土師團長 少將 鄭 雄將軍이 鄉土師團長입니다. 그위의 指揮官은 戰鬪基地敎育司令官 初期에는 尹興禎中將 後期에는 蘇俊烈少將 그위에는 大邱에 있는 2軍司令官에 진용재中將 당시…… 그위에 本 證人입니다.

○李肯珪委員 80年5月18日 3時5分에 發令된 2軍 作戰指示에는 豫備軍 武器庫安全對策講究職場豫備軍武器 및 彈藥回收 軍部隊保管을 명령하고 있고 31師團은 같은 날 武器庫接近者發砲承認을 건의하여 地域司令官은 軍人服務規律에 의거 指揮官裁量으로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日 23時頃 光州稅務署 別館 武器庫가 被襲되어 「카빈」 17정이 피탈된 것을 필두로 總 5,400餘정의 銃器類 29萬발의 小銃彈 550餘개의 수류탄 3,600상자의 TNT가 被奪되므로써 많은 死傷者가 발생됐다고 報告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鄭 雄師團長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責任이 없다고 하는데 武器 및 彈藥을 보호하지 못하고 被奪 당했다면 그 指揮官은 軍法會議에서 有罪判決을 받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軍은 이에 대한 責任所在가 어디에 있었는지 규명하고 武器管理를 소홀히 한 指揮官에게 처벌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李燦性 그 문제에 대해서는 本 證人은 당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武器・彈藥을 관리하는 1次的인 責任은 支・派出所長과 豫備軍指揮官 職場長입니다. 그리고 그위의 責任者가 鄉土師團長입니다.

많은 武器・彈藥을 被奪 당한 1次의 책임은 師團長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支・派出所長과 豫備軍指揮官 또는 職場長인데 즉 말하자면 鄭 雄將軍은 指揮責任은 질 수 있으며 刑事的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고 해서 行政的인 처벌만을 과한 일이 있음

니다.

○李肯珪委員 그 5月18日 擴大非常戒嚴時 空輸部隊 7空輸旅團 投入現況은 2個 大隊는 光州에 1個 大隊는 大田에 1個 大隊는 全州에로 배치한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이 部隊를 누가 作戰 지휘했고 그때 指揮體系를 좀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證人 李燦性 光州에는 제가 듣기로는 鄉土師團인 31師團長이 2個 大隊의 空輸部隊를 지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全州와 大田은 어떠한 配屬關係에서 움직였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시간이다 된 관계로 끝내겠습니다.

當局의 武器回收班이 銃器返納을 기다리면서 光州指導層 人士들로 구성된 市民收拾對策委가 銃器를 반납하려 해도 과격 내지는 强硬派들이 武器를 저지하거나 잠시하였다는데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燦性 그때 당시 狀況報告에 의할 것 같으면 武器가 회수되어서 軍에 반납하는 도중에 다시 强硬派의 反대에 의해서 再分配되어 버렸다 하는 보고는 받은 일이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알겠습니다. 訊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말씀드렸기는 두 시간에 한번씩 휴식하자고 했지만 우리 각 黨代表 혹은 代表 가운데서 無所屬 朴燦鍾委員이 아직 質問 못했기 때문에 朴燦鍾委員의 訊問까지 듣고 그리고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朴燦鍾委員 朴燦鍾委員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軍 또는 軍部라고 하는 것은 12·12와 5·17을 주도했던 軍을 지칭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海軍海兵隊에서 初級將校로 3年半의 義務服務期間을 마친 사람입니다.

豫備役으로서 우리 國軍이 더욱 명예로워져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평소에 그런 제 나름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證人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質問 證人이 陸軍參謀總長으로 任命된 것이 12月13일이지요?

- 證人 李燦性 그렇습니다.
- 朴燦鍾委員 누구 추천입니까?
- 證人 李燦性 軍의 參謀總長을 任命하는데 그때 추천을 받아 가지고 國防長官이 大統領의 教可를 받는지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國防長官이 결정을 해 가지고 大統領의 教可를 받지 않았느냐.....
- 朴燦鍾委員 당시 國防長官은 周永福씨?
- 證人 李燦性 盧載鉉將軍입니다.
- 朴燦鍾委員 證人을 추천해 놓고 즉각 물려 셨지요?
- 證人 李燦性 제가 任命되고 난 다음에 改編이 있었습니다.
-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79年12月20日 崔圭夏大統領의 就任이 있었지요? 기억합니까?
- 證人 李燦性 12月20일입니까?
- 朴燦鍾委員 예.
- 證人 李燦性 아마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朴燦鍾委員 證人은 12月13日 陸軍參謀總長兼 당시 濟州道를 제외한 地域에 宣布되었던 戒嚴司令官으로 就任하셨지요?
- 證人 李燦性 그렇습니다.
- 朴燦鍾委員 그 業務把握이 대체로 여칠간 걸렸습니까?
- 證人 李燦性 그 業務把握의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끝날 때까지 다 완전히 파악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業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業務를 하나 하나 해가면서 파악을...
- 朴燦鍾委員 證人보세요.
- 證人 李燦性 예.
- 朴燦鍾委員 가능한..... 가능한 대강의 業務把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한 일주일 걸렸습니까?
- 證人 李燦性 일주일 걸렸다 열흘 걸렸다 答辯하기는 대단히 난처합니다.
- 朴燦鍾委員 당시에 宣布된 戒嚴의 종류는 뭡니까?
- 證人 李燦性 地域非常戒嚴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燦鍾委員 非常戒嚴?
- 證人 李燦性 예.
- 朴燦鍾委員 非常戒嚴은 어떤 要件일 경우에 發布되는지 아시지요?

- 證人 李燦性 예. 지금 외우지 못 했지만 ...
- 朴燦鍾委員 제가 證人的 기억을 도와드리지요.
- 戒嚴法 4條에는 「戰爭 또는 戰爭에 준할 事變에 있어서 敵의 包圍攻擊으로 社會秩序가 극도로 혼란된 地域에 宣布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戰爭 또는 戰爭에 준할 事變 그러니까 交戰이 임박하거나 거의 交戰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극도의 혼란상태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證人이 취임할 당시에 그리고 崔圭夏大統領이 취임하면 12月20日 12月 下旬 그때에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은 그러나 아니나 제가 물을 때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 證人 李燦性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좀 생각치 않고 그냥 答辯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지식이 없었습니다.
- 朴燦鍾委員 證人的 기억을 내가 도와 드리지요.
- 大學은 전부 休校했고 崔圭夏大統領은 中央廳에서 「리셉션」하고 外觀上으로 완전히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기억합니까?
- 서울 어디에 光州 어디에 釜山 어디에 戰時 또는 戰時에 준할 만한 事變 그렇게 해서 극도의 治安混亂狀態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없었지요? 대답하세요.
- 證人 李燦性 그런 일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 朴燦鍾委員 없었습니다.
- 戒嚴法 20條에는 ... 證人的 기억을 도와 드립니다.
- 이 「非常戒嚴事態가 平常事態로 회복될 때에는 즉시 이를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했습니까?
- 證人 李燦性 안되었습니다.
- 朴燦鍾委員 왜 해제 안했습니까?
- 平常狀態로 회복되었습니다. 12月末 1月 2月 계속해서 平常事態로 회복되었습니다. 3月 거기까지도 平常狀態로 회복되었습니다. 왜 解除를 안했습니까?
- 證人 李燦性 그때에도 平常事態보다 더 惡

化되고 나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해제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朴燦鍾委員 戒嚴法 어느 條項에 平常事態로 회복되고 나서 이후 어느 時點에 단 다시 突發的인 사태가 날 可能性이 있을 때에는 그때까지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하는 條項이 아무데도 없읍니다.

○證人 李炳性 저로서는 그와 같은 法論爭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答辯을 할 수 없읍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은 그 당시에 戒嚴司令官으로서 이 平常事態로 회복된 이 사태에서 非常戒嚴解除建議를 國防長官을 경유해서 大統領에게 하지 않은 데 대해서 職務遺棄의 罪를 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月17日 戒嚴擴大는 證人이 國防長官에게建議했습니까? 아니면 大統領에게 바로建議했습니까? 누구의 建議입니까?

○證人 李炳性 꼭 建議가 있었다 하는 것 보다도 그런 論議가 있어가지고 衆意에 의해 서決定된 것입니다.

○朴燦鍾委員 누구누구하고 議論하셨습니까? 그 衆意라고 할 때 그 「그들」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證人 李炳性 대개 3軍 參謀總長이 되겠읍니다.

○朴燦鍾委員 당시에 中央情報部長署理이고 保安司令官인 全斗煥 당시 中將도 거기에 그 衆意의 「그들」에 포함이 됩니까?

○證人 李炳性 그때 포함되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濟州道까지 擴大한 이유는 戒嚴法 4條에 분명히 그러한 混亂狀態가 있었을 때에만 擴大해야 되는데 濟州道를 제외한 이 南韓의 모든 地域이 戰時 모든 事變에準할 만한 混亂狀態가 가사 있었다는 판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濟州道는 그 당시 명은했는데 擴大한 것은 證인이 戒嚴法을 違背한 것입니다.

제가 미리 答辯드리는 것은 戒嚴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證人は 이 부분에도 戒嚴法을 違背한 것입니다.

戒嚴法 5條에는 非常戒嚴 또는 戒嚴擴大的

경우에 지체없이 國會에 通告하도록 戒嚴法 5條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炳性 그 條項은 알고 있읍니다.

○朴燦鍾委員 그때 대단히 공교롭게도 17日 國會各交涉團體가 國會開會를 要求해서 5月17日 公告를 해서 5月20日 開會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戒嚴法 5條에는 國會가 開會일 때라도 戒嚴을 宣布하거나 擴大할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지체없이 國會에 通告하고 國會召集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大統領이 召集을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國會 스스로가 5月20日 열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事情을 아십니까?

○證人 李炳性 뒤에 들었읍니다.

○朴燦鍾委員 뒤에 들었읍니까?

○證人 李炳性 예.

○朴燦鍾委員 그런데 그 5月20日 國會를 證人이 指揮하는 戒嚴軍으로 하여금 이 國會正門을 裝甲車로 차단하고 國會議員의出入을 막고 당시 新民黨總務 黃洛周議員에게 陸軍大尉가 봉변을 가하고 저도 그 옆에서 저도 그 옆에서 봉변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이 사실은 證인이 아까 指示한 일이 없다고 그랬지요?

○證人 李炳性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나 證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國會通告節次 기왕에 열릴 수 밖에 없는 이 國會 이것에 대해서 證人이 戒嚴總司令官으로서 제대로 點檢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李炳性 國會에 通告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燦鍾委員 國會에 通告해야 할 것 그리고 이왕 國會에 通告하고 國會를 大統領이 召集해야 할 것 그런데 大統領召集要求가 있기 이전에 自然發生的으로 우연히 國會가 5月20日에 自律的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었던 그 國會門을 연 이 일련의 세 가지 일에 대해서 證人은 證人에게 주어진 戒嚴司令官으로서의 그 任務 大統領에게 國會通告를 建議하는 일 그렇게 해서 國會召集을 要求하시라고 建議해야 할 일 그리고 기왕에 열린 國會를 「門을 닫아버린 일.

앞의 두번쩨일은 職務遺棄이고 맨 마지막

일은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말한 것처럼 國家機關을 武力으로 暴力으로 이것을 그 權力行使를 制止한 경우로서 内亂罪에 해당되는데 證人 생각 어때요?

○證人 李炳性 재일 뒤의 문제는 아까 그와 같은 行動이 原任務와 다르게 末端에서 저질러진 잘못된 行爲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파생된 責任을 당시의 最高司令官인 戒嚴司令官이 져야 된다면 당연히 자겠다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았읍니다.

그리고 앞의 두個 問題는 제가 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戒嚴司令官이 해야 될 일인지 혹은 政府에 있는 法制處長이 大統領을 輔弼해서 해야 될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은 戒嚴사령관으로 就任한 이후 5·17까지 6個月 사이에 非常戒嚴解除를建議하거나建議하려고 마음먹어 본 일이 있읍니까?

○證人 李炳性 없었읍니다.

○朴燦鍾委員 證人! 李炳性證人!

○證人 李炳性 예.

○朴燦鍾委員 光州抗爭은 그 始發이 戒嚴解除의 要求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平常狀態로 回復된 12月13日 證인이 戒嚴司令官으로 就任한 이후 즉자 그 戒嚴을 解除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듬해 봄에 學生들의 勤勞者들의 戒嚴解除要求에서부터 이와같은 示威와 抗議가 점차 커지게 된 것입니다.

證人! 지나간 일이지만 이렇게 놓고 볼때 證인의 이 職務遺棄에 대해서 證인은 法律을 모른다고 피하려고 하지만 이 엄청난 結果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 엄청난 結果 결국 光州抗爭으로 이어지고 全斗煥大統領의 大統領就任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끝내 오늘날 5共非理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狀況까지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證人 지금 어떤 생각이 가슴과 머리에 머오릅니까?

○證人 李炳性 지금 朴委員께서 光州事件은 戒嚴令을 解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事件이다라고 斷定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調査하는 것이 이 委員會가 아닙니까?

○朴燦鍾委員 證人 보세요. 제 말을 그렇게 못 알아 들으시나요? 12月에 해제해야 할

戒嚴을 解除하지 않음으로써 2·3月에 가서 戒嚴을 不法하게 維持 延長해 가면서 12·12로 「쿠데타」를 그 軍部가 塹奪의 機會를 엿보고 그것을 빌미로 쓰기위해서 戒嚴을 解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市民의 主張이 戒嚴解除要求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차 增幅되어 간 것입니다. 제 말을 못 알아 들으시나요. 證人은 全軍 主要指揮官會議의 決定內容을 잘 모르신다고 얘기 했지요?

○證人 李炳性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읍니다.

○朴燦鍾委員 거기에서 國保委設立案이 論議되었는지 國會解散이 論議됐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까 우리 同僚委員의 質問에 대해서는 證人은 發言도 안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證人 李炳性 예. 제가 發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 믿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全軍主要指揮官會議의 主宰者は 누구입니까?

○證人 李炳性 國防長官입니다.

○朴燦鍾委員 그 주요한 戒嚴總司令官인 陸軍總長이 아무 發言도 안 했습니까?

○證人 李炳性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까 5·17 이후에 政治人 누구를 連行했는지 그 당시로서는 나는 몰랐다 라고對答하셨습니다. 그렇지요?

5·17戒嚴擴大이후에 政治人과 主要人士들을 連行 家宅軟禁할 때에 具體적으로 누구 누구를 어떻게 連行하고 어떻게 家宅軟禁했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 事後에 알았다 이렇게對答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李炳性 金泳三總裁에 대한 家宅軟禁은 후에 알았고 기타 人士에 대한 拘束 혹은 檢索은 報告를 받은 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朴燦鍾委員 그리고 國會 문단은 것도 5月20日 잘 모르겠다라고對答했습니다. 그런데 證人은 아까 民正黨 同僚委員이 光州에서의 流言蜚語가 어떤 流言蜚語가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스무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여기에서 證言했습니다. 스무가지쯤 된다고 그리고 그 몇 가지 事例를 얘기를 했읍니다.

戒嚴總司令官으로서 누가 連行되고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서 어떤 論議가 있었고 國會 문을 담는 이런 國家 變亂的 行爲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고 事後에 報告를 받았고 證人은 도대체 戒嚴總司令官으로서 陸軍參謀總長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證인이 陸參總長이 되기直前의 12·12事態가 法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 하는 이 事實은 분명히 아까 認定했습니다.

證인이 關與하지 않은 일은 인정하고 證人의 責任所管에 속하는 이 중요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對答하고 있읍니다. 戒嚴司令官이 戒嚴法의 內容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證人! 여기에 있는 國會議員을 證인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읍니다. 歷史와 國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랑되지만 證人은 아까 여기 證言을 시작하고서부터 너무 無氣力한 것 같습니다. 우리 國民의 血稅 4分의 1 가량이 쓰여지는 陸軍의 總帥였었읍니다. 왜 그렇게 無氣力합니까?

이렇게 質問을 하겠습니다. 證人은 戒嚴擴大 戒嚴解除建議 其他 戒嚴業務의 중요한 事項들을 누가 시켜서 한 것 같아요.

또 누가 하는 대로 默認하거나 거기에 順從한다는 인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까? 이 質問에 대해서 答辯해 보세요.

○證人 李炳性 저 나름대로 判斷을 하고 施行을 하고 指示하고 監督을 하였읍니다.

○朴燦鍾委員 그런데도 그러한 중요한 고비는 모르겠다……

光州에 5月16日 직전에 空輸特戰團을 配置한 것은 證人の 指示에 따른 것입니까?

○證人 李炳性 命令은 제 名義로 번려갔읍니다. 命令은 戒嚴司令官 名義로 내려갑니다.

○朴燦鍾委員 그것이 언제 일인지 기억합니까?

○證人 李炳性 그것이 정확한 時間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朴燦鍾委員 5月16日 光州 外廓 高速道路에 空輸特戰團 兵力이 목격이 되고 5月18일 새벽 한時 두時頃에 全南大와 朝鮮大에 空輸特戰團이 進駐하였는데 왜 治安維持를 위한 그

곳에 즉 後方에 滲透하는 特殊部隊인 空輸團을 投入을 했습니까?

○證人 李炳性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大都市에는 國家 重要施設도 많고 大學들도 많았읍니다.

그래서 大都市 地域에 있는 既存의 部隊는 行政勤務部隊 혹은 教育部隊이기 때문에 兵力이 부족해서 그 인근에 있는 戰鬪部隊를 增強配置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5月15日 5月16日 5月17日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 特委에 여러 證人들이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證인이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흘간의 狀況이 昨年 6·29 抗爭 때 서울의 그 穏擾 狀態와를 비교해 볼 때 더 심각했다는 報告를 받았읍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읍니까?

○證人 李炳性 昨年에 그것하고 한 8年前의 것을 비교해서 報告 받았느냐 말씀입니다.

○朴燦鍾委員 8年前에 報告 받아서 證人이 파악하고 있는 그 狀況이 聯想전대 昨年의 6·29 抗爭 때 서울 釜山 光州에서 있었던 그러한 大規模 示威 樣態와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規模가 크고 더 거셌다고 생각합니까?

기억 안나십니까? 말할 수 없읍니까?

○證人 李炳性 서울의 5月13日부터 15일 어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光州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 狀況은 昨年 6月하고 비교해 봐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李炳性 그때보다는 그 前 것이 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朴燦鍾委員 光州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李炳性 光州는 그때 5月15日 16일 그때 다른 地域은 조용했었는데 光州만은 示威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朴燦鍾委員 光州 5月16日에 있었던 民主化 聖會는 平和的 示威로 短期間에 끝났고 學校 修業도 전부 正常이었읍니다. 내 證人の 기억을 上記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 空輸隊가 5月16日 우리가 確保하고 있는 證據에 의하면 光州에 投入이 되어서 初期에 어린아

이들 일곱 살 열세 살 아홉 살 다섯 살 열다섯 살 일곱 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約 20名이 도저히 저항하거나 항거할 능력이 없고 그러한 體力에 未達한 이런 어린이들이 전부 空輸部隊에 銃劍 개머리판에 刺傷 절리고 打撲傷을 입고 이러한 事實을 證人 알고 있습니까? 報告 받았습니까?

○證人 李煥性 光州 때 全期間을 통해서 刺傷에 의한 死亡者는 네名뿐입니다.

○朴燦鍾委員 네名밖에 없습니까?

○證人 李煥性 제가 報告 받기는 그리 받았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の 用語로서는 光州事態 全期間 동안에?

○證人 李煥性 예.

○朴燦鍾委員 全期間 동안에 刺傷이?

○證人 李煥性 예.

○朴燦鍾委員 잠깐 빌려 주세요.

여기 우리 金仁坤委員이 갖고 계신 것만해도 여덟명이에요.

자, 李재천補佐官님 좀 갖다 보여요.

事態 全期間 중에 네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證人 李煥性 예. 제 統計는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보세요 이것을… 얼굴이 각각 다른 사진이 刺傷…

○證人 李煥性 打撲傷까지 다 얘기합니까? 裂傷 같은 것…

○朴燦鍾委員 맞아서 죽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刺傷…

○證人 李煥性 打撲傷까지 합하면 28名입니다.

○朴燦鍾委員 證人は 「타임」과 「뉴스위크」紙에 결박된 채로 결박한 이후에 조기두루미 역듯이 뒤에 손에 손으로 이렇게 너겟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射殺한 그 死體가 당시 7月 8月에 연이어서 報道된 것을 보셨습니까?

○證人 李煥性 뜻여서 射殺된 것은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나중에 金仁坤委員이 사진을 提示할 것입니다. 「제네바」協約에 의한 捕虜도… 證人は 光州市民軍에 대해서 敵이라는 用語를 썼는데 鎮壓日誌에… 「제네바」協約에 의한 捕虜에 관한 規約도 이렇게 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證人!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李煥性 만일 포박을 해가지고 죽였다면 그것은 대단히 犯罪行爲입니다.

○朴燦鍾委員 犯罪行爲고 戒嚴司令官으로서 어떤 責任을 질 수 있습니까?

○證人 李煥性 거기에 대한 응분의 責任을 지겠습니다.

○朴燦鍾委員 責任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證人 李煥性 그것은 역시 法에 의해서 決定될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責任지겠다 어떻게 處罰당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朴燦鍾委員 戒嚴總司令官 이름으로 21日 午後 9時에 自衛權行使 警告放送을 하고 20日 自衛權 發動指示를 下達한데 대해서 證人은 自衛權이 곧 發砲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證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李煥性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나 正當防衛의範圍안에서는 發砲해도 좋다는 包括命令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證人 李煥性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燦鍾委員 正當防衛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發砲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命令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證人 李煥性 正當防衛에 해당된다 하면 銃을 사용해서 해야만 꼭 任務가 違行될 수 있을 때는 發砲를 해야 됩니다.

○朴燦鍾委員 證인이 自衛權手段으로 發砲命令을 했는데 그 概念에는 銃劍使用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正當防衛를 위해서는…

○證人 李煥性 저의 常識으로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朴燦鍾委員 證人は 22日 發砲命令을 하였지만 이미 20日 밤 9時에 최초에 多量의 發砲가 光州市內 곳곳에서 感知되었고 CAC作戰日誌에 의하면 20日밤 10時20分에 그作戰日誌上에도 銃聲이 들렸다 라고 記載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證인의 이런 包括的命令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發砲가 자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狀況에 대해서 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李煥性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正當防衛 혹은 自衛權을 發動하는 것은 本 證인이 서울에서 21日 自衛權을 保有하고 있다는… 宣布하기 이전에도 行할 수 있는 權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5月21日 武裝「헬리콥터」支援建議를 받은 일이 있읍니까?

○證人 李嬉性 제가 直接 받아 본 일이 없고 參謀들이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朴燦鍾委員 證人! 보세요 당시 證인이 業務中에 이른바 光州事態가 進行中일때 이 이상으로 가장 큰 關心을 갖고 그것을 督勵해야 할 일이 어디 있었읍니까? 다른 業務가 있었읍니까? 이와 比肩할… 武裝「헬리콥터」要請 정도에 대해서 總司令官이 그 즉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30分이나 한時間內에 이러한 建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짧은 軍經驗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입니까?

○證人 李嬉性 그렇게 體系가 안 되어 있읍니다.

○朴燦鍾委員 體系가 안 되어 있읍니까?

○證人 李嬉性 예. 그 정도는 參謀線에서 전부 다 專決될 수 있는 線입니다.

○朴燦鍾委員 體系가 안 되어있다고 이야기하셨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습니다.

5月24日 戒嚴日誌에 의하면 誤認衝突로 出動部隊間에 13名의 軍인이 죽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嬉性 그것은 報告받았읍니다.

○朴燦鍾委員 이것을 戒嚴當局 發表로 發表하신 일이 있읍니까?

○證人 李嬉性 發表한 일이 없읍니다.

○朴燦鍾委員 이 未發表로 光州全域에 惡性流言蜚語가 流布되고 이 發表가 없음으로써 軍一部가 反亂했다 하는 惡性流言蜚語가 流布된 가장 큰 原因이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證人 麾下의 戒嚴 總司令部가 國民에게 發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責任 이렇게 해서 生成된 流言蜚語가 流布된 것에 대해서 證人은 어떤 責任을 질 수 있읍니까?

또 誤認衝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軍指揮體系에 문제가 있고 搶亂이 있었다 하는 것

을 뜻하는 것인데 認定하시지요?

○證人 李嬉性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자! 武裝「헬리콥터」支援建議도 指揮體系 때문에 參謀總長 戒嚴 總司令官에게 즉각 報告도 되지 않고 誤認衝突 射擊으로 軍人們끼리 이렇게 죽고 證人이 指揮한 大韓民國 陸軍이 그 당시에는 그러한 指揮體系의 문란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認定하십니까? 대답하세요. 國民의 血稅로 維持되는 陸軍입니다.

○證人 李嬉性 앞의 「헬리콥터」問題는 業務節次 承認節次가 總長까지 올라 안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參謀線에서 決裁하거나 隸下部隊長線에서 決裁되는 것이고 그 많은 殺傷行爲가 我軍의 誤認射擊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發表를 한 것이 물론 한 것만은 못하지만 했어야 옳지만 通常 慣例를 봐서 發表 안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燦鍾委員 戒嚴司側에 不利한 것은 줄이고 안 하고 有利한 것은 增幅시키서 發表하고 그것이 陸軍 總參謀長 戒嚴司令官으로서 온당한 태도라고 지금 8年前의 일을 想起하고 대답하세요. 좋습니다. 5月23日 13時49分에 誰何 不應… 누구냐고 물었을 때 不應할 때만 應射하라는 射擊指示를 한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嬉性 5月23日에…

○朴燦鍾委員 5月24日 1時49分… 戒嚴司作戰日誌에 나온 내용입니다.

○證人 李嬉性 陸軍에서 下達한…

○朴燦鍾委員 下達했읍니다. 기억할 수 없읍니까?

○證人 李嬉性 5月21日 報道를 통해서 自衛權確保를 宣言을 했고 그 다음날 自衛權發動에 관한 隸下部隊 教育目的으로 文書를 下達한 일이 있지만 그 이외 다른 文書가 下達된 기억이 없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時間이 없으니까 終結하도록 해주세요.

○朴燦鍾委員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無差別射擊 狀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指示로 보아지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냐고 물었을 때 不應할 경우에만 그럴 때 相對方이 應射할 때만 射擊하라 이랬을 때 이것은 이

미 그 이전에 無差別 射擊이 있었다는 狀況
을 反證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李炳性 그런 式으로 해석하면 어려움
이 많습니다. 教育的 目的으로 自衛權을 發
動해 가지고 射擊할 때도 誰何를 하고난 다음
에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下肢部를 射擊하라는 教範에도 나와있고 指示
가 있었읍니다.

○朴鍾鎮委員 이제 時間關係로 마지막 質問입니다.

證人은 79年 12月 18日 戒嚴司令官 陸軍參謀
總長 就任한 5日뒤에 軍은 政治에 關與하여
서는 아니된다는 談話를 발표했읍니다.

○證人 李炳性 그렇습니다.

○朴鍾鎮委員 기억합니까?

○證人 李炳性 기억합니다.

○朴鍾鎮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의 事態進展과 경주어 블때 證人은
이 談話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李炳性 대부분의 軍人은 충실했읍
니다.

○朴鍾鎮委員 證人을 묻는 것입니다.

○證人 李炳性 저는 충실했읍니다.

○朴鍾鎮委員 證인이 충실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李炳性 그렇습니다.

○朴鍾鎮委員 저의 質問을 끝내면서 우리 軍
이 證인이 協力했던 12·12 5·17 主導軍이
國民을 統制의 對象으로만 생각하고 억압하면
이것이 制壓된다는 論理 때문에 12·12와 5·
17이 起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民主化는
混沌狀態에 빠져서 지금 5共非理 때문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民主化 發展이 阻害되고 國
力이 浪費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歷史가 다
시 또 한번 停滯狀態에 빠져 있는데 證人은
여전히 이 사실을 自覺하지 못하고 79年 12月
18日 軍은 政治에 關與해서는 안 된다는 그
談話를 지금도 그 精神에 透徹한다고 하니
하늘을 우러러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
입니다. 證人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 이제는 休
息時間이 됐읍니다. 하루종일 수고하셨기 때
문에 이번 休息時間은 조금 길게 해서 10時
40分까지 여기 다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바
랍니다.

停會를 宣言합니다.

(22時21分 會議中止)

(22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다음 訊問者가 訊問하시기 전에 證人에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하루 저녁내 들어보면 잊어버렸다 事後에야
들었다 이런 얘기로서 너무 始終합니다.

모두가 責任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重
大事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關心이 없었다 하
는 말이고 事後에 들었다 하면 그것은 추궁
해서 뒷處理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말고 뒷處理하지 않아 버리고 말
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無責任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戒嚴司令官에 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
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誠意있게 對答하지 않는다는 것
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證人! 좀 더 誠意있게 對答해 주기를 바
랍니다.

이제 金泳鎮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金泳鎮委員 平和民主黨의 金泳鎮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이 歷史의 光州特委聽聞會의 證人
訊問에 臨함에 있어서 먼저 光州에서 8年前
戒嚴軍에 의해 무참하게 虐殺 당한 우리
光州 英靈들의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참으로
가슴을 애이는 아픔을 안고 이 訊問臺에 섰
읍니다.

證人은 12·12事態가 났던 바로 이를 뒤에
陸軍參謀總長兼 戒嚴司令官에 補任되었고 5·
17非常戒嚴 全國擴大 5·18 光州虐殺 鎮壓
그리고 國保衛誕生등 歷史의 소용돌이가 쳤
던 가장 중요한 時代에 중요한 軍 最高責任
者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真實을 言하는 의미
에서 이 歷史의 證言臺 앞에서 바르게 모
른다 기억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로 一貫하
지 말고 責任을 지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證
言에 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本委員이 준비한 訊問에 앞서 먼저 한가지
確認하겠습니다.

5·18 光州虐殺에 대해서 責任을 물는 質
問에 全斗煥 前大統領은 말하기를 자신은 当
시 保安司令官으로서 光州虐殺에 대한 責任은
당시 大統領 그리고 長官 戒嚴司令官 이런
사람들의 責任이라고 분명히 公席에서 말했읍

니다.

이런 全斗煥씨의 견해에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煥性 體系上으로 그 얘기는 옳습니다.

○金泳鎮委員 體系上으로는 옳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證人 李煥性 實際도 그러리라고 믿고 있음을니다.

○金泳鎮委員 實際도 그렇습니까?

○證人 李煥性 예.

○金泳鎮委員 분명히 해 둡시다.

다음 同僚委員들이 質問한 가운데 答辯을 회피하고 또 本委員이 보기로는 質問에 대해서 責任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군데가 있었읍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憲法機關인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를 戒嚴軍을 동원해서 國會 正門앞에서 遮斷을 하고 武力으로 이제 國會가 열리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鐵行에 가까운 짓이 벌어졌다고 證人은 是認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런 현저한 法違反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읍니까? 그리고 現場에 出動했던 部隊 이름도 모른다고 그랬읍니다. 本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당시 33師團은 師團長은 안필준 少將입니다. 거기에 出動했던 101聯隊拿下的 中隊長은 육군大尉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읍니까? 指揮官으로서...

○證人 李煥性 처리를 못했읍니다.

○金泳鎮委員 처리를 못 했으면 職務遺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國憲을 紊亂케 하고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를 遮斷하고 마비시킨 指揮官으로서 處罰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職務遺棄에 해당되지요?

○證人 李煥性 33師團의 上級機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全的으로 당시 戒嚴司令官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金泳鎮委員 指揮體系上 물론 위의 上級部隊는 있지만 이런 엄청난... 國民을 欺瞞하고 憲法機關을 파괴한 일에 대해서는 당시의 戒嚴司令官으로서 職務遺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證人 李煥性 그 末端機關이 命에 의한 것을 잘 못해서 그것을 처리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못한 것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金泳鎮委員 委員長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현저하게 憲法違反 事項입니다. 本委員은 지금 證人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責任回避性發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真相을...

○委員長 文東煥 委員長으로 한 가지 여쭤봅시다.

○證人 李煥性 예.

○委員長 文東煥 아까 모른다고... 늦게 알았다고 그랬지요?

○證人 李煥性 예. 늦게 報告받아서 사실은 알았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것을 추궁해 보았읍니까?

○證人 李煥性 못 했다고 여쭈었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왜 추궁하지 않았어요?

(「委員長이」公正하게 司會만 보세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도 물론 물을수가 있읍니다.

委員長도 訊問權을 가지고 있어요.

○金泳鎮委員 委員長님! 發言 계속하겠습니다.

本委員은 지금 證人이 答하고 있는 가운데 偽證 내지 職務遺棄에 대한 是認을 안하고 있읍니다. 명백하게 職務遺棄임이 確認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聽聞會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調査小委員會를 構成해서 真相을 確認해서 내일 열리는 聽聞會에서 이 문제를 다시 確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읍니까?

○委員長 文東煥 예. 좋습니다.

○金泳鎮委員 이제 本委員이 준비한 訊問을 계속하겠습니다. 證人은...

證人!

○證人 李煥性 예.

○金泳鎮委員 말씀들으세요.

證人은 軍에서 實施하는 忠正訓練을 무슨 訓練으로 알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는 訓練입니까?

○證人 李煥性 忠正作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泳鎮委員 忠正訓練입니다. 忠正作戰과 물론 訓練이 있읍니다. 忠正訓練은 무엇을 하는 訓練입니까? 具體的으로...

○證人 李煥性 각 部隊마다 특정한 訓練의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대개 特戰司와 首都警備司令部가 실시하는 作戰訓練이 그 이름이

볼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金泳鎮委員 暴動鎮壓訓練이 맞지요? 忠正訓練은 暴動鎮壓訓練이라고 여기 陸軍本部에서 提出한 資料에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맞습니까?

○證人 李嬉性 그렇습니까?

○金泳鎮委員 기억을 잘 더듬으셔서 말씀하세요. 證人은 1980年2月18日 作戰命令을 통해서 突發的인 駐擾事態에 對備하는 暴動鎮壓訓練 소위 忠正訓練을 실시하기로 하고 1軍·2軍·3軍司令官 鄭鎬溶 特戰司令官 그리고 당시 虞泰愚 首都警備司令官 등에게 이 忠正計劃을 全軍에 걸쳐서 下達한 바 있지요?

○證人 李嬉性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金泳鎮委員 證人의 이름으로 직접…… 證人의 地位를 이용해서 文書를 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까? 證人이 國防部에 提出한 文書에는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이처럼 80年代初에 들어서 前後方에 있는 全軍에 忠正訓練을 全面 實施하고 특히 이 忠正訓練을 ¼分期안에 2月中에 早期 實施하도록 命令을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읍니까?

○證人 李嬉性 ……

○金泳鎮委員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80年代에 戒嚴司令官인 證人의 戒嚴布告文發表대로 北韓의 南侵企圖가 긴박한 狀況이었다면 全軍에 作戰指針이 暴動에 對備한 忠正訓練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證人은 당시에 北韓의 南侵企圖가 긴박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제속 公式으로 聞明하면서 非定規戰에 對備한 暴動鎮壓訓練을 全軍에 實施하도록 下達한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묻고 있읍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證人 李嬉性 下達한 기억이 없기는 없지만 만일 下達이 되었다면 이와같은 狀況이…

○金泳鎮委員 下達한 기억이 없으면 推定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證人 李嬉性 알겠습니다.

○金泳鎮委員 北韓의 南侵威脅으로 危機感을造成하고 막상 軍內部에서는 高度의 暴動鎮壓訓練인 忠正計劃을 추진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있는데 證人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答辯하고 있읍니다. 本委員이 證人의 기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솔직이 5·17「쿠데타」에 대비한 事前計劃이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왜 변명합니까?

○證人 李嬉性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렇지 않다는 根據가 어디에 있읍니까? 왜 共產軍의 南侵威脅이 심각하다 하면서 全軍에는 暴動鎮壓訓練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¼分期 이전에 全部隊에 실시하도록 特別指示를 합니다.

○證人 李嬉性 ……

○金泳鎮委員 그러면 5·17 全國非常戒嚴措置와 光州抗爭鎮壓後에는 전혀 全部隊에 忠正訓練을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읍니까?

○證人 李嬉性 그때 忠正訓練을 실시했다면 ¼分期까지 완료했다고 했다면 제 판단에는 이렇습니다. 大學이 新學期가 시작되면 每年 年例行事모양으로 學生示威가 일어납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證人 李嬉性 예.

○金泳鎮委員 大學에 대한 暴動鎮壓은 空輸特戰司나 後方部隊로 하여금 과거 通常 實施해 왔던 訓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의 5·17 全國非常戒嚴擴大措置 3個月前인 2月중으로 全軍에 대해서 前後方 할 것없이 1·2·3軍司令부 전부에 대해서 이 忠正訓練을 실시하라고 한 저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證人! 당시 忠正訓練 때 使用하기 위해서 技參하도록 예하부대에 示達한 裝備名을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李嬉性 일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金泳鎮委員 기억나지 않습니까?

○證人 李嬉性 예.

○金泳鎮委員 「가스」銃 鎮壓棒 化學彈 심지어 火焰放射器까지 光州에는 持參을 시켜서 어린 學生과 선량한 市民들에게 이런 武器를 갖고 無差別 鎕壓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證人 李嬉性 ……

○金泳鎮委員 市民이 打倒해야 할 敵입니까? 火焰放射器 化學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런 指示를 내리고 있읍니다. 李嬉性 陸軍參謀總長兼 戒嚴司令官名으로 陸軍本部에 提出한 2級秘密文書에 보면 분명히 이런 裝備를 持參하도록 指示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證人은 이런 指示를 통해서 光州市民虐殺事件發生 初期인 80年5月

19日에는 震壓鎮壓部隊用 特殊鎮壓棒 1萬個를
緊急購入해서 空輸特戰司에 5,438個 2軍에 1,
092個 그리고 3軍에 2,660個를 각각 事前에
遂行토록 指示한 일이 있지요?

○證人 李炳性 기억 납니다.

○金泳鎮委員 바로 이 문제의 鎮壓棒에 무수한
光州市민이 無差別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重傷과 虐殺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證人은 똑똑히 인식해야 됩니다.

證人の 指示로 80年 上半期에 全軍에 걸쳐
실시한 忠正作戰訓練은 5·17軍事 「쿠비타」를
事前計劃 준비하기 위한 對國民 武力鎮壓事前
練習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訓練된 空輸特戰團을 자기의 國民을 敵이나 暴徒로 간
주하여 光州抗爭初期부터 잔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忠正訓練으로 인해
선량한 學生과 光州市민이 無差別하게 죽어갔고 또한 證人에 의해서 실시되고 또 指示된 暴動鎮壓訓練은 급기야 비극적인 光州大
虐殺을 일으킨 主原因이란 사실이 判明됐는데
證人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答辯해
보세요.

○證人 李炳性 유감된 일입니다.

○金泳鎮委員 어떻게 유감됩니까? 그렇게 고
상한 詞語를 사용하지 마시고 具體的으로 심
경을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炳性

○金泳鎮委員 다음 물겠습니다.

空輸特戰司令部 設立背景과 그 任務遂行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本委員은 證人에게 5·18光州抗爭 당시 光州
에 至急 空輸部隊에게 投入되었던 이 空輸特
戰團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證人은 空輸特戰團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證人 李炳性 空輸特戰旅團 처음에 創設된 시기를 언제인지 기억 못합니다.

○金泳鎮委員 1960年6月 車智澈 全斗煥 崔世昌 張基梧 이 네 사람의 大尉와 당시 美國의 「포토버닝」 特殊戰 教育機關에서 6個月間의 特殊訓練을 마치고 歸國을 해서 空輸團을
創設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證人 李炳性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空輸特戰司의 設置目的과 그 任
務는 具體的으로 무엇입니까? 당시 戒嚴司令

官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炳性 空輸特戰旅團의 任務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

○金泳鎮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主要任務만...

○證人 李炳性 戰時에는 敵後方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破壞·拉致·諜報蒐集과 같은 特殊任務를 주로遂行합니다.

○金泳鎮委員 敵後方에 渗透해서 要人을 暗殺하고 그리고 主要施設을 占據하는 등 特殊作戰任務를遂行하지요?

○證人 李炳性 主任務가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그후 1969年 全斗煥의 第1空輸旅團을 중심으로 盧泰愚씨의 9旅團 그리고 鄭鎬溶씨의 7旅團 등 3個旅團을 끼어서 空輸特戰司令部를 創設했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第5共和國을 空輸特戰團에 의한 獨裁共和國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證人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炳性 空輸特戰部隊出身이 많이 登用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金泳鎮委員 間接的으로 是認하십니까? 이론 바 韓國軍空輸部隊代父는 70年代 朴正熙씨의 分身인 車智澈인데 그 뒤를 이어 12·12「구태타」와 5·18光州虐殺을 통해서 執權한 全斗煥씨 그리고 현재 盧泰愚씨 次期를 準備중이라고 하는 鄭鎬溶씨 등 이들은 다 車智澈의 空輸團에 後裔들로서 70年代부터 이 나라를 繼續 支配하고 國民을 抑壓해 온 政治軍人們의 實體인 바 政治에 뛰어든 일부 空輸特戰團에 의한 獨裁共和國이 틀림 없지 않습니까?

證人 어떻습니까?

○證人 李炳性

○金泳鎮委員 자 그러면 이렇게 設立된 空輸特戰團이 5·18光州抗爭 기간 동안에 光州 현지에 내려가서 空輸部隊의 設立目的에 맞는 軍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證人! 證人은 全斗煥씨의 傳記「한강에서 북악까지」라는 책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證人 李炳性 表紙만 봤지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

○金泳鎮委員 表紙는 보셨군요. 그 책의 저

자인 千金城씨의 기록에 의하면 證人은 80年 5月14日 陸軍本部에서 全斗煥씨 廉泰愚씨 鄭鎬溶씨 黃永時씨와 함께 會議를 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證人 李嬉性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전혀 없음니까?

○證人 李嬉性 예.

○金泳鎮委員 그러면 千金城씨와 趙甲濟씨가 虛偽作成 했다는 얘기인데 證人은 앞으로 이 聽聞會 기간 동안에 千金城씨와 趙甲濟씨를 對質訊問해도 되겠습니까?

○證人 李嬉性 예. 좋습니다.

○金泳鎮委員 바로 이 會議에서…… 千金城씨는 말하기를 陸軍本部 5人會議에서 金大中씨 連捕를 사전에 모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 李嬉性 사실이 아닙니다.

○金泳鎮委員 80年5月 空輸特戰旅團이 서울과 光州로 이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 대해서 지시했습니까?

○證人 李嬉性 特戰旅團 兵力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대해서 내려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金泳鎮委員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證人 李嬉性 7旅團에 있는 2個 大隊는 5月17日 저녁부터 행동을 개시해서 光州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旅團하고 3旅團은 5月…… 날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5월18日 19日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空輸特戰司의 戰鬥詳報에 의하면 5月17日 이전에 空輸部隊를 이미 서울과 光州에서 미리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特戰司令官인 鄭鎬溶씨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證人 李嬉性 5月17日 이전에 이동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金泳鎮委員 5月17日 이전에 空輸部隊를 서울과 光州에 미리 이동시켰습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證人 李嬉性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金泳鎮委員 戒嚴司令官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證人 李嬉性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무슨 얘기입니까? 軍體系上

證人이 결정을 했을텐데요.

○證人 李嬉性 모든兵力 이동은 光州뿐만 아니라 全軍에 걸쳐서……

○金泳鎮委員 戒嚴을 擴大措置하라는 내용을 5月 18日에 하지 않습니까?

○證人 李嬉性 18日 零時附인데……

○金泳鎮委員 그런데 17日 空輸部隊는 현지에 이동한다 말입니다. 이 중대한 조치를 누가 취했느냐 그 말입니다.

○證人 李嬉性 그 18日에 맞춰서 배치되자마자 17日 저녁부터 이동을 개시했을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이 결정은 證人の 單獨決定이었습니까? 戒嚴司令官의……

○證人 李嬉性 저의 作戰命令에 의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당시 軍의 實勢였던 全斗煥씨 廉泰愚씨 鄭鎬溶씨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일은 없습니까?

○證人 李嬉性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특히 이 부분은 歷史的인 준엄한 책임이 따를테니까 분명히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 學生示威나 教授들의 民主化 요구가 空輸特戰團을 투입시켜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까?

○證人 李嬉性 처음에 全國非常戒嚴을 위해서 배치된 것은豫防目的으로 투입된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당초에豫防目的으로 갔습니까?

○證人 李嬉性 全部隊를豫防目的으로 보냈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런데 당초에 과연 대로 가서豫防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證人 李嬉性 학교 안에 들어가서 駐屯만하고 청소하고……

○金泳鎮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具體적으로 가서豫防目的만 했는지 그 行爲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證人이 5月 光州抗爭을 武力으로 鎮壓하기 위해서 수립한 5·25尙武忠正作戰實施指針에 의하면 戒嚴解除 學園自律化 言論自由 등을 요구한 市民들을 暴徒나 凶惡犯 또 共產主義者들이라고 證人은 말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證人 李煥性 大부분의 光州市민은 선량한 市民입니다.

그러나 銃器를 탈취하고 銃을 쏘고 刑務所를 습격하고 있는 分子들은 暴徒에 틀림없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光州에 있는 80萬市民이 가령 證人의 말대로 불과 한두 사람의 몇 사람의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光州市민을 暴徒다 혹은 不純分子의 조종을 받았다고 그렇게 總稱할 수 있읍니까?

○證人 李煥性 그렇게 할 수 없읍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이 시달한 尚武忠正作戰實施指針이 여기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記錄하고 있읍니다.

市民들을 暴徒나 凶惡犯 共產主義者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煥性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金泳鎮委員 暴徒 凶惡犯 共產主義者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읍니다.

○證人 李煥性 全市民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까?

○金泳鎮委員 그러면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은 市民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煥性 그 토막만 떡 읽으니까 무엇을 그렇게 지칭했다는 것을 잘 모르겠읍니다.

○金泳鎮委員 光州抗爭期間 동안에 光州에서 民主主義를 위해서 멀쳐 나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충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당시 戒嚴司令官을 역임했던 證人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고 있읍니다.

○證人 李煥性 전 기본 자세가 대부분의 市民은 선량한 市民이다. 그러나 개중에 暴徒가 있다 이와같이 하는 것이 基本的인 자세였는데 만일 그와 같은 分類가 되지 않고 光州市민 전체를 暴徒라고 규정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金泳鎮委員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證人은 民主主義를 요구한 400萬 全南道民

을 暴徒로 지금까지 规定을 했습니다.

물론 政府가 主管했던 民和委에서 光州民主化運動이라고 하는 그런 매우 어설픈 紛明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民主主義를 요구했던 光州市민을 통해서 暴徒 不純分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證人 李煥性 전부 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 잘못입니다.

○金泳鎮委員 분명히 잘못입니다?

○證人 李煥性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서는 그렇게 전부다 规定을 그렇게 한 일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金泳鎮委員 잘못이라고 분명히 證人은 시인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光州市民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證人 李煥性 그렇게 표현되었다 하는 것을 찾아 가지고 분명히 되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좋습니다.

다음 訊問하겠습니다.

證人이 光州抗爭期間中 下達한 發砲命令은 정확히 언제 무슨 이유에서 했읍니까?

○證人 李煥性 發砲命令입니다?

○金泳鎮委員 예.

○證人 李煥性 發砲命令을 下達한 일이 없읍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무슨 命令을 下達했읍니까?

○證人 李煥性 自衛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일이 한번 있고 隸下部隊에서는 自衛權을 발동할 때는 이러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러이러한 節次에 의해서 실시하라는 教訓의 인 公文을 下達한 바가 있읍니다.

○金泳鎮委員 民主主義를 주장하는 市民을 향해서 銃을 쏘고 무고한 市民 良民을 무참하게 학살한 것도 自衛權 發動입니다?

○證人 李煥性 自衛權 發動의 规定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왜 發砲命令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自衛權 發動이라고 말합니까?

○證人 李煥性 自衛權을 규정하고 있는 衛戍令에 自衛를 위해서 하는 行動이 规定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이發砲命令은 國防部가 本特委에 제출한 資料에 의하면 全南北戒嚴分所長인

당시 蘇俊烈將軍의 發砲命令指示는 5月21日 午後 8時30分이었습니다. 진중재 2軍司令官의 發砲命令指示는 5月22日 午前 10時30분입니다. 이런 發砲命令을 과연 過度한 措置라고 보십니까?

○證人 李炳性 金委員께서 發砲命令 發砲命令하는 것이 自衛權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金泳鎮委員 무고한 市民에게 銃를 쏘아서 良民을 학살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읍니다.

○證人 李炳性 自衛權은 아무 對抗도 하지 않고 있는 市民에 대해서 쏠 수 있는 權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金泳鎮委員 좋습니다.

自衛權을 發動했는지 良民을 학살했는지 한번 봅시다.

證人 80年5月24日 光州 송암동에서 良民을 학살한 事件에 대해서 알고 있읍니까?

○證人 李炳性 잘 모르고 있읍니다.

○金泳鎮委員 모르고 있읍니까?

○證人 李炳性 예.

○金泳鎮委員 光州 백운동에 있는 壽德國民學校에 진제마을에서 戒嚴軍이 APC 裝甲車를 앞세우고 지원洞에서 이동하고 있읍니다. 여기는 평온한 들판입니다. 그런데 이 裝甲車를 앞세우고 45臺의 「트럭」이 裝甲車를 뒤따르는 데 「트럭」위에서 M16을 가지고 이 원제貯水池에서 목욕을 하던 어린 學生들을 무차별 亂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戒嚴軍의 잔학한 亂射에 의해 방광봉군이 現場에서 死亡을 했습니다. 1時 20分입니다. 全南中學校

1學年 在學中입니다. 또 이 진제마을에서는 전재수군이 자기의 벗어진 고무신을 즐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엎드린 순간 現場에서 사격을 해서 몸뚱이가 갈라진채 死亡했습니다.

이 戒嚴軍은 계속해서 移動해옵니다. 송학동 마을에서는 철면조 250마리를 亂射해서 사살합니다. 또 한선웅씨의 젖소 세마리를 亂射합니다. 이것이 自衛權 發動입니까? 이것이 良民虐殺이 아닙니까?

○證人 李炳性 만일 委員께서 얘기한 대로가 사실과 같다면 그것은 自衛權이 아닙니다.

○金泳鎮委員 이것은 반드시 사실입니다. 證實입니다.

그 다음에 임암동 마을 道路邊에서는 박연홍 女人을 비롯한 네 名의 마을 아주머니들이 戒嚴軍이 亂射한 銃을 피하기 위해서 下水口로 들어갔습니다. 下水口에 들어간 이 박연홍女人을 향해서 조준해서 現場에서 사격을 해서 即死시켰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良民 세 사람이 있읍니다. 권근립씨 임병철씨 김승우씨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後患이 두려워서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권근립씨는 대검으로 現場에서 殺害를 하고 임병철씨와 김승우씨는 각각 세발의 M16을 머리에 亂射를 해서 死殺시킵니다. 이것이 自衛權입니까? 이것이 光州市민이 바로 證인이 戒嚴司令官으로 있던 5月18일부터 27日 항쟁기간 동안에 있었던 비참한 良民 虐殺의 참사 現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自衛權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이런 光州市민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도 앞으로 24일과 25일 개최되는 聽聞會에서 그 실상을 다시 계속 밝혀야 할 것입니다.

證人! 이 真實이 보이십니까?

○證人 李炳性 보입니다.

○金泳鎮委員 光州市民은 당시 軍部統治決死反對를 계속 외쳤습니다. 이런 光州市민을 향해서 여기에 부상 당한 어린이가 있읍니다. 이 어린이가 무슨 罪가 있읍니까? M16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소위 大韓民國의 國軍이 할 짓입니까?

證人은 아까 同僚委員들의 質問에 손을 뒤로 묶고 사격을 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읍니다.

똑똑히 보세요. 光州市민이 이렇게 포승풀에 묶인채 殺害당했었습니다. 證人은 보고 계십니까?

○證人 李炳性 예. 봤습니다.

○金泳鎮委員 여기 集團으로 殺害 당한 光州市民의 모습을 보십니까? 이것이 自衛權 發動입니까? 이렇게 무고한 良民이 虐殺 당하고 또 전재수군을 비롯한 그 천진난만한 여섯살의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검정고무신을 주우려고 하는 아직 솜털도 빠지지 않은 그 어린 생명의 그 손에 사격을 가한 이 戒嚴軍이

누구입니까?

證人은 어린 손자들이 있지요?

○證人 李炳性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證인이 戒嚴司令官 휘하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遺族들의 아픔이 하늘을 치솟는데 證人は 자기의 孫子를 사랑한다고 하고 품에 안고 그 孫子는 예뻐할 수 있습니까?

歷史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證人! 證人은 80年5月27日 이른바 尚武忠正作戰 즉 全南道廳 鎮壓作戰을 언제 누구에게 전의했습니까?

○證人 李炳性 그것은 전의하지 않고 실시한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證인이 單獨으로 실시했습니까?

○證人 李炳性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좋습니다. 여기 提出된 資料에 보면 韓·美兩國과 합의사항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사실하고 다릅니까?

○證人 李炳性 다릅니다.

○金泳鎮委員 당시 戒嚴司令官인 證人은 韓·美兩國과 합의를 해서 24日 道廳을 鎮壓하겠다고 하는 建議를 27日로 韓·美兩國과 합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文書는 어디 文書입니다?

○證人 李炳性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金泳鎮委員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證人 李炳性 그 내용은 며칠까지 韓·美協調를 해가자. 며칠까지 作戰保留하라는 내용의 그것입니까?

○金泳鎮委員 參謀總長은 韓·美 協議事項으로 忠正作戰을 24日까지 당초에는 연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27日 零時2分부터 실시하도록 韓下部隊에 실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證人 李炳性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분명히 여기에 보면 陸軍本部에서 제출한 資料에 보면 韩·美協議事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李炳性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끈질기게 光州虐殺에 대해서 美國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虛構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炳性 그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韓·美間에 협의가 光州事件에 대한 시기 決定에 대한 것인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美國은 만일의 경우 光州事態가 長期化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소란이 있고 北傀의 南侵이 있을 경우를 고려해 가지고 美國의 空軍과 海軍을 韓國 近海에 배치할 때까지 作戰開始를 기다려 달라 하는 내용의 협조입니다.

협의사항이지 다른 光州에 영향을 미칠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金泳鎮委員 무슨 말씀입니까? 5月26日 16時40分 韓·美聯合司의 作戰參謀部長「로버트 세니월드」와 같이 당시의 陸軍本部의 作戰參謀部長인 金在明將軍과 서로 협의했다고 분명히 文書에 나와있고 지금 參謀總長이 지시를 했는데 이 사항은 韩·美間의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字句上 표기되어 있습니다.

○證人 李炳性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金泳鎮委員 文書로 말해야 됩니다. 證人の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文書에 의하면 분명히 5·18光州虐殺事件은 美國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炳性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이 文書는 어떻게 된 文書입니까?

이 文書도 당초에… 陸軍本部에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光州民主化運動을 조사하기 위한 우리 光州特委의 文書檢證班이 현장에 가서 추가로 제출된 資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밤에 받아서 확인한 것입니다.

證人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책임짓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는 그만쯤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金泳鎮委員 委員長님! 제가 마치겠습니다.

本委員은 이제 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면서 방금 제기된 몇가지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忠正作戰은 5月17日 軍事「쿠데타」 실시를 위해 事前計劃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紋明

했읍니다.

光州市민의 虐殺에는 美國이 直間接的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情況이 방금 제시한 文書를 통해서 드러났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번째는 光州抗爭의 武力鎮壓을 위한 發砲命令者와 5月27日 全南道廳의 武力鎮壓에 대한 일차적인 責任所在가 바로 戒嚴司令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읍니다.

끌으로 空輸部隊 殘虐相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이 어린이의 良民虐殺… 證人은 계속해서 이것이 自衛權發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심지어 부녀자에 대한 殺傷行爲 이런 모든 眞相에 대해서 證人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發見되면 責任지겠다고 말했읍니다.

이상의 사실들에서 확인되었듯이 歷史속에서 軍의 政治介入은 이 歷史에 큰 汚點을 남기고 선량한 우리 國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켰읍니다.

軍은 본연의 使命에 진력해야 합니다. 그런 軍에 대해서 우리 國民은 신뢰와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國防을 지키고 있는 60萬 國防軍人에 대해서는 큰 감사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政治軍人の 5·18光州虐殺 이 關聯者이 眞相에 대해서만은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歷史的인 사실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責任을 國民과 함께 준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證人은 戒嚴司令官과 陸軍參謀總長이라고 하는 軍의 최고의 指揮官으로서 歷史앞에 저지른 엄청난 과오를 변명하지 말고 준엄하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證人! 혹시 證人께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읍니까?

○證人 李壻性 지금 金委員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일부는 수긍할 수 있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규정으로서 제가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金泳鎮委員 光州特委는 이 聽聞會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特委는 계속해서 眞相을 규명해 갈 것입니다.

本委員이 방금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시 戒嚴司令官 陸軍參謀總長인 證人은 끝까

지 責任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朴泰權委員께서 訊問해 주십시오.

○朴泰權委員 民主黨의 朴泰權委員입니다.

證人께서 長時間 訊問에 응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 委員들이 이 歷史의 회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과거의 歷史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고자 하는 質問에 대하여 지금껏 證人께서는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르겠다 離下부隊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모른다 하는 식의 答辯의 회피성을 本委員이 생각할 때 오늘이 자리에서 證人으로서 너무도 과거에 엄청난 자리에서 陸軍參謀總長으로서 戒嚴司令官으로서 또 12·12事態와 5·17事態를 묵인해 줌으로써 第5共和國에 와서는 権府속에서 長官과 또 그후에는 國營業體의 理事長까지 지내는 화려한 비호를 받고서 이제 여러 委員들이 지적한 대로 光州民主抗爭의 歷史의 준엄한 審判을 내려야 할 이 자리에서 양심을 버리고 私心을 가지고 答辯한다든지 이 자리에 있는 주변의 人物을 살피고 答辯하는 등 정말 불성실하기 이를데 없읍니다.

本委員이 묻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온 國民이 믿고 존경받는 과거의 參謀總長자리에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양심을 바로 세우고 國民을 안전하게 받드는 軍人精神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경복궁 생일집잔치라는 별들의 모임이 사실 後日에 12·12事態라고 지칭되고 大下剋上의 모임에 앞으로 本委員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석했었으면 했다 참석하지 않았으면 안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歟學聖…

○證人 李壻性 어느 時期입니까?

○朴泰權委員 12·12事態 때 경복궁 모임있지 않습니까?

○證人 李壻性 경복궁 모임에…

○朴泰權委員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警備團長室입니다.

車圭憲… 당시 首都軍團長 참석했읍니까?

○證人 李壻性 거기에 참석한 것은 전혀 누

구누구인지 모릅니다.

○朴泰權委員 모릅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黃永時 당시 1軍團長 盧泰愚 9師團長 白雲澤 당시 71防衛師團長 朴俊炳 당시 20師團長 朴熙道 崔世昌 張基梧 등 당시 特戰旅團長 張世東 당시 30警備團長 首警司隸下部隊입니다. 金振永 당시 33警備團長도 참석했습니다.

기억이 안나십니까?

○證人 李燦性 안납니다.

○朴泰權委員 전혀 안납니까?

○證人 李燦性 예.

○朴泰權委員 당시 그 자리에는 당시 保安司令官이었던 全斗煥씨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答辯 안하기 때문에 제가 答辯해 드리죠.

왜 참석을 안했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이 미 노 이전부터 모략과 음모가進行되어 오다 이 당시 保安司令官은 總理公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總理公館은 아직 大統領이 青瓦臺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總理公館에 崔大統領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論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본 일이 있읍니까?

答辯을 해보세요.

못들었으면 못들었다 들었으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證人 李燦性 못들었습니다.

○朴泰權委員 들었다고 하면 더 큰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崔圭夏證인이 나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장소는 앞에서 얘기한대로 第30警備團長室 張世東團長室이었읍니다.

여기에 證인이 참석할 수가 없었겠지요.

證人은 그 당시 어디에 무슨 職에 있었읍니까?

○證人 李燦性 中央情報部長署理職입니다

○朴泰權委員 軍에서는?

○證人 李燦性 職責은 中央情報部長署理였고요
階級은 中將이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전혀 몰랐읍니까?

○證人 李燦性 몰랐읍니다.

○朴泰權委員 中央情報部長이 뭐하는 것입니까?

정말 몰랐읍니까?

○證人 李燦性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이 날밤 그 당시에 이루어진 소위 12·12事態에 前方에 배치되어 있던 9師團이 위치와 임무를 망각하고 陸軍戰力에 있어서 엄청난 國土防衛를 맡고 있는 이 部隊가 시내로 들어왔지요?

○證人 李燦性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燦性 그 指揮上에 있는 指揮官에 대해서制止가 되어야 됩니다.

○朴泰權委員 制止만 되면 됩니다?

어떤 엄벌에 처해야 합니까? 어떤 違法措置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됩니다?

○證人 李燦性 그 事案에 따라서 指揮官이 처리할...

○朴泰權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일이 있었죠? 그간에...

○證人 李燦性 저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朴泰權委員 이것도 後日에 알았겠죠?

○證人 李燦性 後日에 알았습니다.

○朴泰權委員 後日에 알았다면 이 12·12事態가 일어난 후에 곧바로 陸軍參謀總長이 되었죠?

○證人 李燦性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陸軍參謀總長으로서는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後日에 報告받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證人 李燦性 그 당시는 그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둑인해 주는 것이었읍니까?

모든 일은 사건이 난 후에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法에 저촉을 받는지 안 받는지 違法인지 아닌지 軍의 여러가지 規定에 위배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 말씀이죠?

○證人 李燦性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陸軍參謀總長이 연행된 것도 公館에서 체포되지 않았읍니까? 그렇지

요?

○證人 李燭性 예.

○朴泰權委員 證人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죠?

○證人 李燭性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행한 사건이라고 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證人께서는 소위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모임에서 이루어졌던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이는 쪽이었군요?

그렇지요?

○證人 李燭性 그때 狀況은 그렇게 되었읍니다.

○朴泰權委員 이러한 문제들이 大統領이나 그 당시 總理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總長이 되기 전에 證人께서는 中央情報部長이라면 모든 情報를入手해서 大統領에게 報告해야 되지 않습니까?

○證人 李燭性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것은 12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서 行해졌던 일인데 한번도 報告한 일이 없지요?

○證人 李燭性 예. 그와같은 謀報를入手한 일이 없읍니다.

○朴泰權委員 그 謀報를 정말로入手를 못했읍니까?

○證人 李燭性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하늘을 두고도 말씀할 수 있읍니까?

○證人 李燭性 예. 저까지 報告가 일체 안되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뒤에 알았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證人 李燭性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事後處理를 왜 안했읍니까?

○證人 李燭性 그때는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혼란한 시기였읍니다.

○朴泰權委員 어떤 혼란한 시기입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軍이 질서가 下級部隊長들이 參謀總長까지 연행하고 여러가지 그러한 軍의 위계질서를 파괴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묵인해 준다는 것입니까? 밝혀보세요. 왜 말씀을 안하십니까?

○證人 李燭性 저의 역부족이었읍니다.

○朴泰權委員 이제 실토를 하시는군요. 그 역부족에서부터 이제 양심에 따른 말씀을 해주세요. 證人은 12·12事態後 정말 역부족의 행위에 따라서 그 主體者들에 의한 승진도 되고 陸軍 參謀總長도 되고 戒嚴司令官도 되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귀하는 정말로 모른다고 하시지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묵인하는 사전에 情報를 듣고도 묵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는 5共和國에서도 비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證人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을 해주셨읍니다. 이때 모든 일들이 證人과 또 證人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모두 직무유기이고 이를 알고도 동조했다면 나쁘게 또는 긍정적인 표현에 따라서는 이 주모자들은 엄단에 처하거나 「쿠데타」의 반란자로 보거나 정말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고 이들을 용징하고 넘어가지 않은 歷史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證人 맞지요?

○證人 李燭性 예.

○朴泰權委員 이들 세력들은 해를 바꾸어서 5月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國會 强占이 있었습니다. 民主人士를 연행했습니다. 온 國民이 열화와 같은 정말 民主의 時代가 열리는 80年代 봄을 맞이해서 회망과 政治的民主化를 갈구하는 모든 國民들에게 정말 송두리째 앗아간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光州에 空輸部隊를 投入했읍니다. 이런 등 아까 證人께서는 軍配置命令에 대해 質問할 때마다 아래 下級部隊에서 했다 證人이 즉 本人이 들었다 이전 정도로 答辯했읍니다. 證人은 그렇다면 그 당시 戒嚴司令官이라든지 陸軍參謀總長으로서 좀 심각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허수아비였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證人 李燭性 말단 部隊를 일일이 배치하는 것은 역시 전결권에 관계되는 문제이지 일일이 總長이…

○朴泰權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알 아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國會에서 있었던

이러한 拘束事件 國會가 열리는 것을 방해한事件 이러한 것들은 후에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證人 李燦性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후에 알았을 때에 그 행위를 한 部隊는 어느 部隊였습니까? 報告를 받았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證人 李燦性 그때 당시 어느 部隊라는 報告는 명확하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朴泰權委員 후에 報告를 받았다면 이러한 일을 모르신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온 國民들중에서 證人的 말을 믿을 사람이 없읍니다.

○證人 李燦性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와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억이 없어 그러는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정말 證人은 허수아비였습니까? 陸軍參謀總長, 戒嚴司令官 모두 차단되었었습니까?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燦性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행사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역부족에 따라서 못한 일도 있다는 것을 시인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지금도 역부족이라서 말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證人 李燦性 國會를 강점하고 그와같은 문제는...

○朴泰權委員 80年 5月 17日 밤 9時 30분에 中央廳에서 緊急國務會議가 열렸읍니다. 당시 總理를 비롯한 모든 長官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소위 全國非常擴大戒嚴을 가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國務會議場에 올라가는 中央廳계단에는 軍이 배치되어 있었읍니다.

그 이야기는 들으셨읍니까? 들으신 일도 없읍니까? 그것도 역부족이었읍니까?

○證人 李燦性 잘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모릅니까? 이 당시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당시 文敎部長官을 지낸 金玉吉長官이 계단을 올라갈 때 그 계단에 塊列되어 있는 지금 證인이 밝히지 않는 部隊의 部隊員에 대해서 長官이 수모를 겪고 올라갔읍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서 國務會議 때 本委員이 알기로는 全國非常擴大戒嚴에 대해서 거부했읍니다.

이것은 證인이 알고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本委員이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얻은 자료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戒嚴司令官室 하에는 평상시에는 作戰狀況日誌가 있고 陸軍本部에 戒嚴時에는 戒嚴狀況日誌가 있지요 있읍니까? 없읍니까?

○證人 李燦性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朴泰權委員 證人! 정말 제가 질문을 더 해야 할지 여기서 중단해야 될지 저도 판단하기 힘듭니다.

戒嚴司令官께서 狀況日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물으니까 지금에야 있는 것을 알았었다. 너무 答辯이 불성실합니다.

그런데 이 狀況日誌가 5月17日 19時15分부터 18日 08時10分까지 約13時間의 狀況日誌가 없읍니다.

이건 왜 없느냐 앞에서 많은 委員들이 지적했고 本委員도 지적했듯이 國會의 강점 民主人士의 拘禁連行 예비 경속등 혼갖 못된 것을 다 자행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證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狀況日誌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특수한 部隊의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光州特委를 통해서 이 진상을 앞으로 밝혀내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不法 다시 말해 음모된 계략은 非常戒嚴宣布를 전제로 자행된 우리 역사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法的으로 완벽한 위법이요. 證人은 職務遺棄 職權濫用 歷史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끔직한 이런 일들은 軍에서 모든 일들이 「시나리오」가 있어야되고 作戰計劃이 있어야 되고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 명령을 하달하는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國憲을 혼들고 國家의 변화를 가져온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데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證人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保安司

令部에서 했습니까? 安企部에서 했습니까?

合同検査本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崔圭夏大統領께서 했습니까?

○證人 李煥性 그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대개 答辯을 요구하니 答辯할 길이 없읍니다.

○朴泰權委員 다음에 20師團 兵力의 移動問題 를 앞에서 여러 委員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本委員이 調査한 資料에 보면 2軍司令部에 이른바 忠正作戰 指令을 내린 時間은 2軍司令部 作戰指示는 5月17日 19時40分 입니다. 이것은 戰敎司作戰日誌 우리가 이번 特委가 받은 資料에 나타나 있읍니다. 알겠지요?

○證人 李煥性 5月17일입니다?

○朴泰權委員 5月17日 19時40分입니다.

○證人 李煥性 20師團에 관계된 문제입니까?

○朴泰權委員 아니 지금 忠正作戰… 20師團을 묻기 위해서 여기서 부터 물습니다.

또 同日 非常國務會議는 21時40분에 시작해서 8분만에 끝났읍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證人 李煥性 대개 맞을 것 같습니다.

○朴泰權委員 20師團이 光州로 移動한 時間은 몇칠 몇時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證人 李煥性 아마 5月20日부터 21日 사이라고 기억합니다.

○朴泰權委員 날짜는 맞습니다. 그런데 22日 몇시서 부터 移動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煥性 정확한 時間까지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朴泰權委員 22時30分으로 陸本에서 提出한 資料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데 證人은 民和委에서 參考人書面陳述에 20師團 兵力은 駐韓·美聯合軍司令部의 지휘를 떠나 何時를 막론하고 戒嚴目的에 사용할 수 있다고 陳述했읍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까?

○證人 李煥性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美國國務省 代辦人이 1980年 5月22日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師團의 移動을 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또 82年 7月12日 「글라이스틴」「뉴욕타임즈」에 寄稿한 글에서도 20師團은 光州移動을 허락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時差가 문제입

니다. 5月18日 忠正作戰時 20師團長이었던 박준병師團長은 월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駐屯地에서 5月15日 移動을 시작해서 서울에 投入되었다 이랬습니다. 또 聯合軍司令部의 兵力移動 및 指揮權移讓은 5月16日 오후6時 이후로 되어 있읍니다라고 그 寄稿에서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 證人은 이 時差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읍니까?

○證人 李煥性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와같은 時差問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20師團의 部隊가 作戰指揮權이 陸軍本部에 있었느냐 韓美聯合司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陸軍의 指揮下에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조금전에 證人이 答辯한 24師團의 移動은 20日 22時30分이라는 것을 맞다고 하셨읍니다.

○證人 李煥性 駐屯地에서 서울에 나오는 것은 그 이전입니다.

○朴泰權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이야기했고 光州로 移動할때의 상황입니다. 또 光州로 移動한 것은 聯合軍司令部의 承認은 5月22日 받았읍니다. 出動은 이미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20日 22時30分이라면 時差가 엄청나게 나는 것인지요? 그렇지요?

○證人 李煥性 거기에는 무슨 착오가 있거나 문제가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는 비춰 볼 때 이미 光州에 投入되기 시작한 것은 그 얼마전에 오래전부터 모든 계획이 서있다고 證明할 수 있다고 보는데 證人 어찌십니까?

○證人 李煥性 너무나 지나친 판단입니다.

○朴泰權委員 지금 根據資料에서 나왔지않습니까. 軍의 作戰命令의 생명은 作戰任務가 있어야 되고 作戰命令時間이 있어야 되고 移動한 規模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읍니다. 더구나 戒嚴時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까지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지금 發砲命令에 대해서 또는 그 여러가지 문제들을 앞에서 여러 委員들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저는 그 각도를 달리하겠습니다.

光州에 投入되는 示威鎮壓 소위 5·18光州抗

爭의 그 선량한 市民들에게 示威鎮壓으로 投入된 兵力에게 實彈을 支給한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證人 李炳性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朴泰權委員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光州에 投入된 兵力들이 投入될 때 實彈을 支給했습니까 안했습니까?

○證人 李炳性 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朴泰權委員 안했습니까?

○證人 李炳性 아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部隊가 移動할 때 아무 상황이 없이 평시에 移動할 때에도 指揮官 재량에 의해서 實彈을 가져 갈 경우도 있고 안 가져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指揮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는 것은 陸軍總長으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朴泰權委員 示威鎮壓時に 총을 발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李炳性 상황에 따라서는 自衛權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朴泰權委員 自衛權을 둔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示威鎮壓하러 들어갈 때 實彈을 支給합니까 안합니까?

○證人 李炳性 示威를 鎮壓할 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朴泰權委員 示威鎮壓 때 할 수도 있다?

○證人 李炳性 예.

○朴泰權委員 그러면 示威鎮壓하러 가는 軍人들이 그 무장한 것을 보면 또 作戰任務에서 도 보면 거의 표현이 暴徒鎮壓 擦蕩作戰 射殺 등 정말 우리 선량한 國民들로서는 듣기 거북한 用語들이 作戰命令에 나타나 있음을니다. 더불어 光州에 投入된 空輸旅團의 兵力들에게 최초에는 中隊長까지만 10발씩 實彈을 支給했었습니다. 그 후 소위 지금 證인이 이야기하는대로 示威民主抗爭群衆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流言蜚語에 의해서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投入되어 있던 空輸旅團의 士兵들까지도 實彈을 支給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良識 있는 指揮者들은 實彈支給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

람은 이 實彈을 支給했습니다. 이것은 證人하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特委가 열리면서 그 對象者하고 따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사실을 하나 밝히고자 합니다.

證人! 光州에 投入된 어느 旅團 한 旅團이 光州에 27日 소위 擦蕩作戰 道廳 主要建物들 示威鎮壓을 하고 거기에 끝까지 抗爭하는 民主市民들을 擦蕩하기 위해서 無差別亂射하면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自衛權이 아닙니다. 또 教育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M16 9, 646發 M203 19發 수류탄 12發 TNT25「파운드」권총 667發 M60 925發 66LCW 260發 연막탄 18發 쇠투탄 150發 오색신호탄 70發 화염방사기 7臺 統合計 1萬1,792發을 쏘았습니다. 여기에서 살아 남은 분들은 정말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戰鬪狀況報告가 良民 射殺 1名으로 報告되었습니다. 총알이 사람을 다 비켜 갔겠지요?

證人! 우리 한번 잠시 숙연한 마음으로 이 엄청난 歷史의 비극을 證人과 우리 함께 한번 회개 합시다. 이제 다시는 이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우리는 오직 이 진실을 밝혀서 온 國民들이 이 당시에 피해보신분들을 어루만져 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온 國民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歷史創出과 ……

이 당시에 被害를 보았던 光州民衆抗爭의 그 위대한 市民들에게 名譽를 회복시켜 주고 우리는 다 함께 이들을 뜨거운 손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이 없이는 안됩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앞으로 證人께서도 정말 진실을 밝히고 私心을 버리고 양심을 세워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비록 과거에 無能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러한 權座에 있었다치지만 이제 앞으로 證人께서도 훌륭히 眞實을 밝히고 이 시대의 새로운 章을 열어 나가시도록 합시다. 證人 마지막으로 하나님 물겠습니다. 證人은 이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후에 들었던 불탔든 또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았든 結果的으로 다 알았습니다. 證人께서

이러한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證人의 心情을 歷史와 國民앞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證人 李燭性 참 어려운 注文입니다. 당시 戒嚴司令官으로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또 오늘 이와 같이 나와서 證言을 하게 된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이 땅에 戒嚴令이라 하는 것이 下達되지 않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國民이 法秩序를 지키고 혼란한 社會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朴泰權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吳景義委員 한 말씀만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지금 밤늦도록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들을 하시고 또한 證人 李燭性씨도 늦은 밤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도저히 本委員이 이런 사황으로 聽聞會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委員長님께 좀더 議事進行을 聽聞會를 效率的으로 할 수 있도록 證人에게 성실하지 못한 答辯이나 또는 責任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底意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한 答辯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證人께서는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좀 缺禮의 얘기일지는 모르나 責任을 져야 될 부분은 모르는 것이고 責任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國民은 이 자리에 지켜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聽聞會를 하려면은 아예 빼려치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本委員은 듭니다.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光州市民은 죽었고 또 聽聞會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해서 國民들앞에 우리는 밝혀 드려야 될 任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서 밤늦도록 來日까지 聽聞會를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名이 죽었든 193名이 죽었든 1,000Name이 죽었든 사람은 죽어서 이미 그 선량한 百姓들

이 죽이 된 지가 오래인데 충한방도 쏟 사람이 없읍니다. 죽인 사람은 없어! 아까 證人이 말씀하시기를 打撲傷입은 사람까지 뭐 한 280名정도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聽聞會를 하는 목적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종 저런 狀態로써 答辯을 하신다면은 이 聽聞會의 의의가 어디에 있겠느냐 國會를 濟慶하던 그런 情性을 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同僚委員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國會를 어떻게 알고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議員을 어떻게 알기에 그런 式으로 계속해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겨우 軍人們이 誤判을 해서 자기네끼리 쌩 가지고 열두사람 죽인 것은 밝혀졌습니다. 계속해서 證人을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지 말아 주시기를 委員長님께 부탁을 드리고 좀더 성실한 答辯을 들을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委員長 文東煥 吳委員의 심정을 충분히 알겠으면서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시작되기 전에 제가 證人에게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質問하신 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강하게 質問하시기에 내가 결들여서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앉아 있는데 證人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歷史에 관한 문제이고 자기 자신의 人間性에 관한 문제요. 民族의 앞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세일 처음에 얘기 했지만 이것이 바로 풀려질 때 우리 歷史가 새시대를 향해서 장족의 發展을 하게 됩니다.

民族과 나라를 위해서 좀더 성실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委員되시는 분들도 우리 앞에 나온 證人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의 가진 지혜를 더 짜내서 얻을 수 있는데 까지 얻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다시 모여서 어떤 對策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

(「委員長님 議事進行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金光一委員 지금 12時2分前인데요. 次數를
변경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質問할 분이
열여덟분 중에 일곱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열한분이 남았거든요 밤새워 한다고 해도 다
섯時間30분이 필요합니다. 休息時間하면 여섯
時間인데 그것은 우리 묻는 委員들도 무리하고
또 答辯하는 證人도 무리이고 이 関係從事者
모두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試問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
來日아침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
으면 좋겠습니다.

來日의 證人은 순연하면서 말이지요.

○委員長 文東煥 이렇게 하십시오.

金仁坤委員이 다음이군요 金仁坤委員이 幹事
이시니까 다음 분으로 넘기고 幹事들이 議論
해서 … 그러면 金仁坤委員이 하시기를 願하
니까 하고 그리고 證人도 승낙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 동안 幹事님들이 다시
모이셔서 새로운 해결방법이 있으면 좋고 그
렇게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그러면 子正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지금
4黨幹事의 합의로 子正이 넘어서 来日 聽聞
會를 계속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會議次數變更을 해야 하겠습니다.

證人으로 출석하신 李嬉性씨도 19日에 계속
해서 證言해 주실 것을 同意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곧
이어서 19日 會議를 開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4時가 되었으므로 散會를 宣布합
니다.

(23時59分 散會)

○出席委員

文東煥	權海玉	金吉弘	樸培和
朴嬉太	權海玉	沈明輔	金英淑
安榮基	辛卿植	李吉慶	鄭容宰
李道先	李魯敏	鄭東基	李宰玉
鄭昌和	變金	洪基衡	徐錫宰
李海鳳	趙敏	趙奎泰	金英祥
崔景義	沈濟一	朴和滿	鄭光錫
吳金文	金仁仁	張石滿	金玉宰

朴燦鍾

○委員아닌出席議員

金潤元	換基	金盧德	圭承順	金培
朴鎮	愼泰	愼憲	煥淳	淑容
鄭姜	信雄	趙玉	泳昇	玉宰
崔炯佑	佑佑	金金	三采	

○出席專門委員及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陳在勳
立法審議官	金永善

○出席讀人

金大中	李嬉性
-----	-----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	李炳勇	沈明輔	民主正義黨
	趙榮藏	鄭昌和	民主正義黨
	鄭夢準	朴燦鍾	어느交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議員

(8月17日字)